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19

2017. 10. 24.(화)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병진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7년 9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9월 29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10월 16일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박병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도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야생동물 등의 충돌사고로부터 운전자와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로관리기관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신속하게 사체처리를 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 도지사가 관할하는 도로로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 충돌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사체처리 등 관리기관의 임무를 명확히 함(안 제4조)

○ 동물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야생동물 사체발견 최초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정일하)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16년도 도내 야생동물 로드킬은 총 195건이 신고되었고, 217마리가 사고를 당하였으며, 미신고 건수를 추정하면 연간 1,000여건 이상으로 추정됨

○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 상에서 차량과 야생동물과의 충돌로 인해 사체가 노상에 방치되어 운전자들의 혐오감 유발과 2차사고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임무를 정하는 것으로 생태통로 설치,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하드웨어적 예방대책과 정기순찰, 신속한 사체처리 등의 소프트웨어적 대책을 병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 지방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기관의 임무를 정하여 도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17. 9. 21.~'17. 9. 26.)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도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야생동물 등의 충돌사고로부터 운전자와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로관리기관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신속하게 사체처리를 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신고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방도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과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충청북도 내 지방도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를 말한다.
4. “최초신고자”란 지방도상에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여 관리기관에 최초로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도지사가 관할하는 도로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 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별표에 따른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청구) 관리기관은 제4조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관리기관은 제4제2항에 따른 최초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체신고 안내판(제4조 관련)

1. 규격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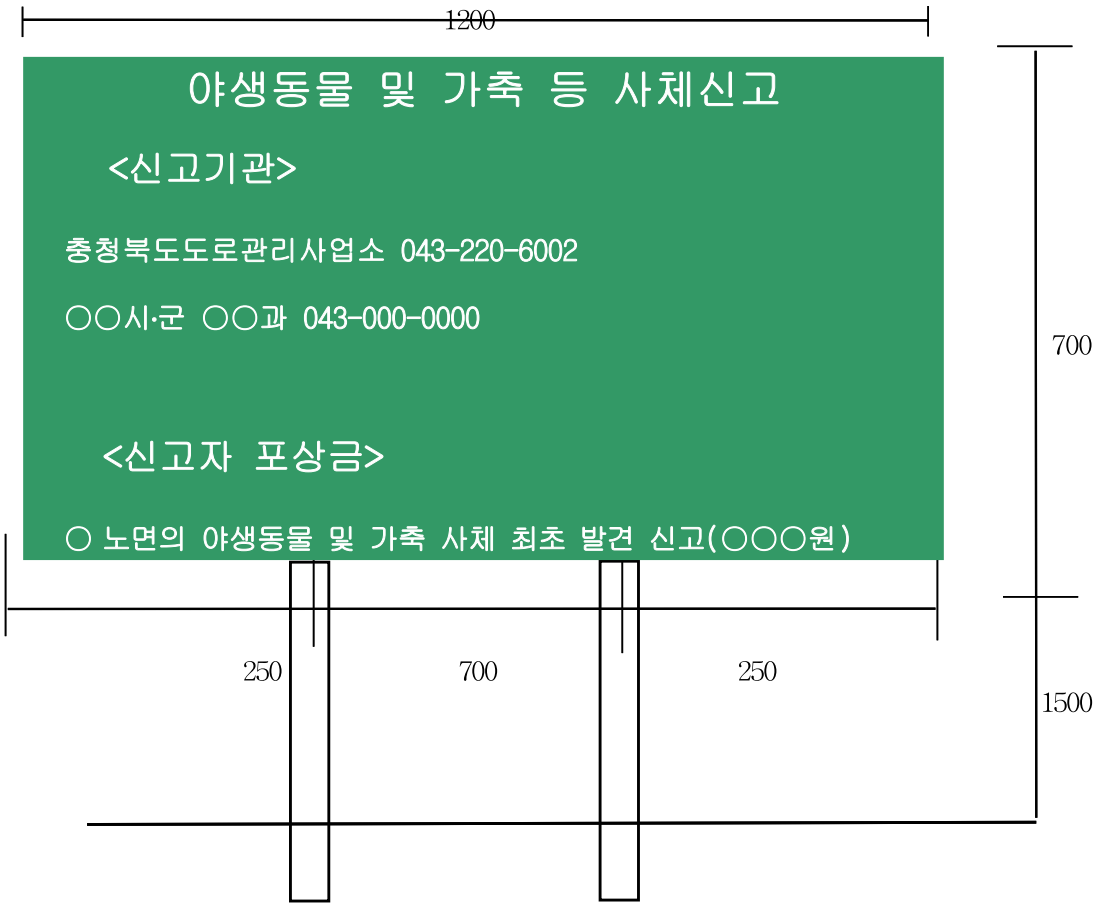

2. 설치위치 :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산간지 등

［별지 서식］

포상금 지급대장(제6조 관련)

지급 번호	포상자				포상 종류	포상금 (원)	지급 일자	접수 번호	계좌번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여)	연락처					

관 계 법 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 2014.3.24>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3. ~ 9. <생 략>

[문화재보호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2012.2.22, 2013.3.23>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 10. <생 략>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2015.1.20>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 9. <생 략>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5.7.20>

② <생 략>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지방도에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과 충돌 후 방치된 사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

○ 동물 사체를 도로 이용자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로드킬 사체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함

3. 관련조문

○ 제5조(비용청구) 관리기관은 제4조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 관리기관은 제4제2항에 따른 최초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행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최초 신고자에 포상금 1만원 지급이 명시되어 있음

❍ 우리도 연간 로드킬 발생은 180여건 정도로 추정되며 이에 1,800천원 정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추계 결과**

❍ 180건 × 10천원/건 = 1,800천원

□ **재원조달방안**

❍ 지방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이기영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18년)	2차년도 (‘19년)	3차년도 (‘20년)	4차년도 (‘21년)	5차년도 (‘22년)	계
세 입							
세 출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로드킬 최초신고자 포상금 지급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재원 조달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지방세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